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내 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24호, 2016.7.1.)」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광주광역시 동구 ○○○○과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1]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 등 4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명시된 행정처분 처리기한을 초과함으로써, 법령위반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등을 위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처리기간 현황

사업장명	점검일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처분결과	처리기간 (일)
○○○○	2013.10.14.	폐수위탁처리 변경신고 미이행	2013.10.21.	경고 및 과태료(60만원)	7
○○○○○○○○ 세차장	2014.10.10.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2014.10.14.	개선기간 내 개선 (부과금 500,770원)	4
○○○○○세차 장	2016.2.6.	배출시설결실	2016.2.19.	신고취소	13
○○○○○○○	2016.2.4.	배출시설결실	2016.2.18.	신고취소	14

※ 광주광역시 동구 ○○○○과 제출자료(행정처분대장) 재구성

2. 광주광역시 서구(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광주광역시 서구 ○○○○과, ○○○○과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2]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 등 3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명시된 행정처분 처리기한을 초과함으로써, 법령위반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등을 위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처리기간 현황

사업장명	점검일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처분결과	처리기간 (일)	비고
○○○○○○○	2014.4.22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014.4.28	폐쇄명령	6	녹색
○○○○○	2015.8.4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015.8.11	폐쇄명령	7	녹색
○○○○○	2016.5.17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건폐법 제13조)	2016.6.8	영업정지 과태료	21	청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과, ○○○○○과 제출자료(행정처분대장) 재구성

3. 광주광역시 남구(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생태과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3]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 등 8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명시된 행정처분 처리기한을 초과함으로써, 법령위반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등을 위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처리기간 현황

사업장명	점검일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처분결과	처리기간 (일)
○○○○○○○○○	2014.10.23.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운영	2015.01.02.	폐쇄명령	69
○○○○○○○	2014.10.23.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운영	2015.01.02.	폐쇄명령	69
○○○○○	2014.05.1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014.06.09.	고발, 영업정지	20
○○○○○	2015.02.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015.03.03.	영업정지	17
(주)○○○○○	2015.09.02.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015.09.10.	과태료	8
(주)○○○○○	2016.05.1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016.05.18.	과태료	7
○○○○○	2016.06.27.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016.07.04.	과태료	7
○○○○○○○(주)	2016.07.08.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016.08.03.	과태료	25

※ 광주광역시 남구 ○○○○○과 제출자료(행정처분대장)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은

[주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